

예 산 총 칙

2017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111,299,344	33,338,980
일반회계	853,772,570	25,613,177
특별회계	257,526,774	7,725,803
공기업특별회계	185,718,082	5,571,542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76,048,436	2,281,453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3,518,863	1,605,566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6,150,783	1,684,523
기타특별회계	71,808,692	2,154,261
주택사업특별회계	3,293,703	98,811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4,709,067	141,272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200,000	6,000
기반시설설치 및 운영 특별회계	52,189	1,566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7,160,088	214,803
교통사업특별회계	11,956,836	358,705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23,066,012	691,980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21,370,797	641,124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 세입·세출 예산 "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 채무부담행위조서 " 와 같다.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 계속비사업조서 " 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 명시이월사업조서 " 와 같다. (해당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206,566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8,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